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8

발의연월일: 2024. 7. 3.

발 의 자:김정호·허종식·어기구

정성호 • 윤후덕 • 김남희

전재수 · 박해철 · 박 정

이훈기 • 박희승 • 조 국

이연희 · 이수진 의원

(14위)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규제완화 및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외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현금지원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취소·철회하 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구 체적인 지원금 환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미비한 규정 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인 폐업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이 각종 혜택을 수혜 받았음에도 그에 따 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에 대한 지원금 환수 절차를 규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폐업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심의 및 조사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수금을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6항 신설).
- 나.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21조제7항·제8항 및 제27조제1항제11호 신설).
- 다.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함(안 제21조의2 신설).
- 라. 폐업 사전신고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사하여 그 내용

이 거짓인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폐업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 제5항제3호 및 제37조제1항제5호 신설).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환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폐업 사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한다.
-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1조제 7항에 따라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근로자 인권보장 및 노사관계 공 정성 확대를 위하여 합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21조제7항의 폐업 사전신고에 관한 사항

제28조제2항제3호 중 "이행"을 "이행 및 사실관계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21조제7항에 따른 폐업 사전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21조제7항에 따른 폐업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을 한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6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 용한다.

제3조(폐업 사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업을 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
금지원) ① ~ ⑤ (생 략)	금지원) ① ~ ⑤ (현행과 같
	음)
<u><신 설></u>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
	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
	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
	며, 그 밖에 환수의 방법 및 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u>령으로 정한다.</u>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① ~ ⑥ (생 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⑦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
	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
	자기업이 폐업을 하려는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u><신 설></u>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
	항에 따라 폐업 사전신고를 받

<신 설>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①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 인투자위원회를 둔다.

1. ~ 10. (생 략) <신 설>

11. · 12. (생략)

② ~ ⑤ (생 략)

제28조(보고·조사 및 시정 등) 제28조(보고·조사 및 시정 등)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 또

은	경우에는 이	를 제	27조이	따
른	외국인투자의	위원회	에 안	건으
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사 회적 책임)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1조제7항에 따라 폐업을 하 려는 때에는 근로자 인권보장 및 노사관계 공정성 확대를 위 하여 합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①	

- 1. ~ 10. (현행과 같음)
- 11. 제21조제7항의 폐업 사전신 고에 관한 사항
- <u>12.</u>·<u>13.</u> (현행 제11호 및 제12 호와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2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 또는 신고한 내용의 <u>이행</u>에 관한 사항
- ③ ④ (생 략)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 자기업,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하거나 사용 하는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 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⑥·⑦ (생 략)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신 설>

· 1.·2. (현행과 같음)
,
3
이행 및
<u>사실관계 확인</u>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ठ</u> ो व्रे ः
<u>한다</u> .
1.・2. (현행과 같음)
3. 제21조제7항에 따른 폐업 사
전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⑥·⑦ (현행과 같음)
세37조(과태료) ①
1107年(平月五) ①
<u>,</u>
1. ~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제7항에 따른 폐업 사

	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
	<u>을 한 자</u>
<u>5.</u> (생 략)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